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태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26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 안태준·소병훈·이재강

정성호 · 송석준 · 송옥주

이광희 · 정준호 · 이수진

모경종 • 홍기원 • 김병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·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 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,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

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배치하기"를 "배치하며 수도권 안의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"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8호) 중 "제7호"를 "제8호"로 한다.

8.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	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
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	
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	
적정하게 <u>배치하기</u> 위하여 중	
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	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
장・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	<u>7]</u>
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	
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	
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	
입안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격차
	해소에 관한 사항
<u>8.</u> 제1호부터 <u>제7호</u> 까지의 사항	<u>9.</u> <u>মা৪ই</u>
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	
에 관한 사항	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